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12. 22 선고 2017가합147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종중

피고B

변론 종결2017. 11. 17.

판결 선고2017. 12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양주시 C 전 13,372㎡ 중

1)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지상의 담장을,

2) 같은 도면 표시 8, 9, 10, 11,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철파이프 선수대기실
20㎡를,

3) 같은 도면 표시 12, 13, 14, 15,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철파이프 선수대기실
20㎡를,

4) 같은 도면 표시 16, 17, 18, 19,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부분 지상 경량판넬 단층
무허가 창고 36㎡를,

5) 같은 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마)부분 지상 컨테이너 무허가
운동시설(사무실) 336㎡를,

6) 같은 도면 표시 24, 25, 26, 27,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바)부분 컨테이너 무허가
운동시설(실내연습장) 12㎡를,

7) 같은 도면 표시 28, 29, 30, 22,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사)부분 지상 컨테이너

운동시설(사무실) 9m²를

각 철거하고,

나. 위 토지를 인도하고,

다. 60,500,000원 및 2017. 7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,7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재판장판사정원

판사이진영

판사서진원

별지